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6월 12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0년 6월 8일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0년 6월 10일

라. 상정일자: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의결(2020. 6. 12.)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김성기 복지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기원과의 협약 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다른 사무방식보다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업 개요

○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면적(㎡)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 허준로 209(가양동)	지하1층,지상3층	1,891.39

○ 위탁사무내용

- 사례관리: 보호 및 사례개입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서비스제공: 가족기능강화, 재가서비스, 자활지원 등
- 지역조직화: 지역조직화(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 시설물과 복지관 재산의 유지 관리
- 기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운영

○ 위탁기간: 5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유찰2회시 수의협약 가능)

○ 소요예산: 연간 1,015,550천원(시비 100%)

2) 추진일정

○ 2020. 7~8월: 공개모집 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구성

○ 2020. 9~10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심사

○ 2020. 11~12월: 협약체결 및 인수인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부칙 제3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정우숙)

○ 본 동의안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기원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사회복지관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주관부서에서 완료하였습니다.

○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 재위탁은 수탁자가 변경되는 만큼 수탁체 선정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철저한 인수인계로 해당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사회의 상대적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게 불편함이 없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1부.

참고 관계 법령 및 참고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u>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u>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무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부칙 제3조(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 사무의 경우 제7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